**“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및 “비타민 C”를 배합한 상품의 표시 기준**

“자외선 흡수제・산란제”를 배합한 상품

|  |  |  |  |  |
| --- | --- | --- | --- | --- |
| 표시 항목 | 화장품 | | 의약부외품 (약용화장품) | |
|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자외선 차단제로서 배합한 화장품 (주1) |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제품의 안정제 (퇴색방지제 등)로서 배합한 화장품 |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자외선 차단제제로서 배합한 약용화장품 |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제품의 안정제 (퇴색방지제 등)로서 배합한 약용화장품 |
| “자외선 흡수제 배합” “자외선 산란제 배합” “자외선 차단제 배합” 등의 표시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하지 않는다. (주2)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하지 않는다. (주2) |
| “자외선을 차단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등 피부에 대한 자외선 차단 효과라고 인식되는 표시 (주3)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할 수 없다. (주4)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할 수 없습니다. |
| 1)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 배합의 표시 기준 | | | | |

주1 “자외선 차단제로서 배합”이란 피부에 대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아래 중 하나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SPF 값을 측정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① 이외의 공표된 측정방법에 의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가 있는 경우
3. 내용물 조성이 이미 자외선 차단 효과가 증명된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 이 경우에는 “성분명(제품의 퇴색방지제)” (예를 들면, “파라메톡시 계피산 2-에틸헥실(제품의 퇴색방지제)”)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3 “피부에 대한 자외선 차단 효과로 인식되는 표시”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연상시키는 회화, 도해를 포함한다.

4 “표시할 수 없다”란 경품표시법 또는 의약품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표시를 말한다.

2) “UV”의 특별기재 표시기준(주5)

|  |  |  |
| --- | --- | --- |
| 표시 항목 | 화장품 | |
|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자외선 차단제 로 배합한 화장품 |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제품의 안정제로서 배합한 화장품 (주7) |
|  |
| “UV 차단” 등 자외선 차단으로 인식되는 표시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할 수 없다. |  |
| “UV 케어” 등피부 그을림 후의 케어로 인식되는 표시 | ● 표시할 수 없다. | ● 표시할 수 없다. |  |
| 그 외 “UV” “UV 대응” “UV 대책” 등의 표시 (주8)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할 수 없다.  단, 세안제품 등 상품상 자외선 차단, 케어(미백)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화장품을 “UV” 시리즈에 조합할 경우에는 해당 시리즈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외선 차단, 케어(미백) 상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료하게 표시할 것. (주9)  (예)  "본 제품은 UV 대응 제품이 아닙니다"  “본 제품은 세안제품으로 자외선 대응 상품이 아닙니다”  “자외선이나 기미, 주근깨를 방지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등 |  |
| 피부 그을림에 의한 기미, 주근깨를 방지한다”의 효능표시  ※승인된 효능 · 효과의 문구를 바꾸지 말고 표시할 것.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표시 항목 | 의약부외품 (약용화장품) | | |
|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자외선 차단제로 배합한 약용화장품 |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제품의 안정제로서 배합한 약용화장품 | |
| 피부 그을림 후의 케어(미백)를 목적으로 한 약용화장품 (주7) | 그 이외의 약용화장품 |
| “UV 차단제” 등 자외선의 차단으로 인식되는 표시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할 수 없다. | ● 표시할 수 없다. |
| “UV 케어” 등 피부 그을림 후의 케어로 인식되는 표시 | ● 표시할 수 없다.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할 수 없다. |
| 그 외 “UV” “UV 대응” “UV 대책” 등의 표시 (주8) | ○ 표시할 수 있다. | ○ 표시할 수 있다.  단, 표시할 때는 피부 그을림 후의 케어(미백) 상품이라는 내용을 명료하게 표시함과 동시에, “피부 그을림에 의한 기미, 주근깨를 방지한다”의 효능 표시도 함께 표시할 것.  (예)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용화장수”  “피부 그을림 후의 기미, 주근깨를 방지하는 약용화장품” 등 | ● 표시할 수 없다.  단, 세안제품 등 상품상 자외선 차단, 케어(미백)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화장품을 “UV” 시리즈에 조합한 경우에는 해당 시리즈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외선 차단, 케어(미백) 상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료하게 표시할 것.  (예)  "본 제품은 UV 대응 제품이 아닙니다"  “본 제품은 세안제품으로 자외선 대응 상품이 아닙니다”  “자외선이나 기미, 주근깨를 방지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등 |
| 피부 그을림에 의한 기미, 주근깨를 방지한다”의 효능 표시   ※승인된 효능 · 효과의 문구를 바꾸지 말고 표시할 것. | ○표시할 수 있다. | ○표시할 수 있다.  단, 표시할 때는 “피부 그을림에 의한 기미, 주근깨를 방지한다”의 효능 표시와 함께, 피부 그을림 후의 케어(미백) 상품이라는 내용을 명료하게 할 것.  (예)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용화장수”  “피부 그을림 후의 기미, 주근깨를 방지하는 약용화장품” | ● 표시할 수 없다. (주10) |

주 5 “UV”의 특별기재 표시란 “UV”를 단독 혹은 “UV 차단” 등 “UV”를 이용한 단어를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UV에 동의어인 “자외선” 문구를 포함한다.

6 “자외선 흡수제 · 산란제”를 배합하지 않은 화장품(또는 약용화장품)에서의 “UV”의 특별기재 표시는 “안정제(stabilizer)로 배합”의 표시기준에 준해 표시할 것.

7 피부 그을림 후의 케어란 미백을 의미한다.

8 “UV”의 특별기재 표시”에는 시리즈명, 판매명의 “UV”도 포함된다.

9 단서는 UV의 특별기재 표시가 있는 외상자, 용기 각각의 정면 또는 이면에 표시한다. 표시부분, 글자크기 등을 특별히 정하지 않지만, 단서의 취지를 토대로 명료하게 표시한다. 또한, “(예)”는 예시이며, 이 문구에 관계없이 단서의 취지를 살린 표시를 할 것. (이하 같다)

10 “UV” 표시가 없어도 안정제로서 배합한 경우에는 표시할 수 없다.

11 "UV"를 표시하지 않는 약용화장품은 단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비타민 C”를 배합한 상품의 표시기준**

|  |  |  |  |
| --- | --- | --- | --- |
| 표시 항목 | 화장품 | 의약부외품 (약용화장품) | |
| “비타민 C”를 제품의 안정제 (항산화제 등)로서 배합한 화장품 | “비타민 C”를 제품의 안정제(항산화 제 등)로서 배합한 미백 이외의 약용화장품 | “비타민 C”를 유효성분으로 배합한 약용화장품 |
| “비타민 C” “아스콜빈산” “비타민 C 유도체” 등의 성분 표시 (주12) | ● 표시하지 않는다. (주13) | ● 표시하지 않는다. (주13) | ○ 표시할 수 있다. |
| “미백 효과”의 표시 (주14)  ※승인된 효능 · 효과의 범위를 초과해서 표시하면 안 된다. | ● 표시할 수 없다. | ● 표시할 수 없다. | ○ 표시할 수 있다.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그을림에 의한 기미, 주근깨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을 것. |

주 12 “비타민C 유도체” 등은 성분표시에 “비타민C”의 문자가 포함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13 전성분 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14 “미백 효과”의 표시에 대해서

1. “비타민C” 이외의 다른 유효 성분에 의해 미백 효능이 승인된 경우에는 “미백 효과” 표시를 할 수 있다.
2. 피니시용 화장품 등의 “미백 효과” 표시는 메이크업 효과에 의해 피부를 하얗게 연출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을 것.

비고

이 표시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던 날(199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